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68
----------	-------

발의연월일 : 2025. 7. 14.

발 의 자 : 김동아 · 이병진 · 김승원
장종태 · 박해철 · 정일영
권향엽 · 최민희 · 김문수
이재강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인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음.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대리함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의”를 “제5항의”로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헌법재판소장
4. 헌법재판관
5. 검찰총장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직에 임명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임명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거부) ① (생략)	제8조(등록거부) ① (헌행과 같음)
<u><신설></u>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헌법재판소장
	4. 헌법재판관
	5. 검찰총장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 ----- -----.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④ ----- ----- ----- ----- -----. 다만, 제2항

<u>설></u>	<u>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있었</u> <u>던 사람이 등록신청을 한 경</u> <u>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법무부장관은 <u>제4항의</u>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 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⑥ -----<u>제5항의</u>----- ----- ----- -----.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 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 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 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 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등록취소) ①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u> <u>나의 해당하는 직에 임명된</u> <u>경우</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